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규 항로표지용 선박 건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08.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항만운영과”를 “항만물류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운영과장”을 “항만물류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항로표지과”를 “항행정보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표지과장”을 “항행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항로표지사무소”를 “항행정보시설사무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항로표지과”를 “항행정보시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표지과장”을 각각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를 “해양수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항로표지사무소)”를 “(항행정보시설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표지사무소장”을 각각 “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6조제10항 중 “2024년 8월 9일”을 “2025년 8월 9일”로 한다.

별표 6의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의 명칭란 중 “진도항로표지사무소”를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로 한다.

별표 2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56”을 각각 “1,262”로 하고,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07”을 “409”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3”을 “345”로 하고,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방송통신서기 · 환경서기 · 해양수산서기 · 운전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21”을 “223”으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60”을 각각 “1,266”으로 하고,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08”을 “41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58”을 “360”으로 하고,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방송통신서기 · 환경서기 · 해양수산서기 · 운전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12”를 “214”로 한다.

별표 31 중 7. 제46조제10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8월 9일) “2024년 8월 9일”을 “2025년 8월 9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① (생 략)	제2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 디 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 <u>서기</u> <u>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으로 보	② ----- ----- ----- <u>과학</u> <u>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 ----- ----- -----.
하고,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 술서기관 · 서기관 · 해양수산사 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 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해운물류국) ① (생 략)	제9조(해운물류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해운물류국에 해운정책과 · 연안해운과 · 선원정책과 · 항만 물류기획과 · <u>항만운영과</u> · 항만 안전보안과 및 스마트해운물류 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으로 보하고, 스마트해운물류팀 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 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 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 ----- <u>항만물류산업과</u> ----- ----- ----- ----- ----- ----- ----- ----- -----.

③ ~ ⑥ (생 략)

⑦ 항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⑧ · ⑨ (생 략)

제10조(해사안전국) ① (생 략)

② 해사안전국에 해사안전정책과 · 해사산업기술과 · 해사안전관리과 · 항로표지과 및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⑥ 항로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3. (생 략)

⑦ (생 략)

제21조(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고, 건설사무소 · 항로표지사무소 및 해양수산사무소의 소속 · 명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항만물류산업과장-----
-----.

1. ~ 13. (현행과 같음)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해사안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항행정보정책과-----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항행정보정책과장-----
-----.

1. ~ 3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명칭 등) -----

-----항행정보시설사무소-----

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
과 같다.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생
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영지원
과·선원해사안전과·항만물류
과·해양수산환경과·항만건설
과(부산·인천 지방해양수산청
은 제외한다)·항로표지과 및
어항건설과(여수·마산·목포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에 한정
한다)를 두고, 부산지방해양수
산청에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을
두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계
획조사과·항만개발과 및 항만
정비과를 둔다.

③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
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
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
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지원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
양수산청의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은 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해양수

-----.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현행
과 같음)

② -----

-----항행정보시설과

-----.

③ -----

제26조(<u>항로표지사무소</u>) ① <u>항로표지사무소장</u>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③ 삭제 ④ <u>항로표지사무소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제46조(한시정원) ① ~ ④ (생략) ⑤ ~ ⑨ 삭제 ⑩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4년 8월 9일까지</u>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⑪ ~ ⑳ (생략)	제26조(<u>항행정보시설사무소</u>) ① <u>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u>----- ----- ---. ② (현행과 같음) ④ <u>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u>----- -----. 1. ~ 10. (현행과 같음) 제46조(한시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⑩ ----- ----- ----- ----- -- <u>2025년 8월 9일</u>----- ----- -----. ⑪ ~ ⑳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256</u>	<u>1,262</u>	+6
일반직 계	<u>1,256</u>	<u>1,262</u>	+6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407</u>	<u>409</u>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 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 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43</u>	<u>345</u>	+2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방송통신서기 · 환경서기 · 해 양수산서기 · 운전서기 · 방재안 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 ·	<u>221</u> · ·	<u>223</u> · ·	+2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260</u>	<u>1,266</u>	+6
일반직 계	<u>1,260</u>	<u>1,266</u>	+6
·	·	·	
·	·	·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방송통신주사·전산주사·환 경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408</u>	<u>410</u>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 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 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 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58</u>	<u>360</u>	+2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방송통신서기 · 환경서기 · 해 양수산서기 · 운전서기 · 방재안 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 ·	<u>212</u> · ·	<u>214</u> · ·	+2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6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7. 제46조제10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8월 9일) · ·	· · <u>7. 제46조 제10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8월 9일)</u> · ·	· · <u>7. 제46조 제10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8월 9일)</u> · ·	